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3 선고 2019가합563723 판결 [구상금 등 청구]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신준선, 강대희

피고 1. 주식회사 A

2.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강태경, 조재호

3. C

변론 종결 2020. 7. 9.

판결 선고 2020. 9. 3.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4,259,047원 및 그 중 443,768,720원에 대하여 2019. 7. 31.부터 피고 주식회사 A는 2019. 10. 15.까지, 피고 B은 2019. 9. 17.까지 각 연 8%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C 사이에 2019. 6.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9. 6. 4. 접수 제764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6. 11. 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	피고 회사	2016. 11. 07. (D)	536,000,000원	2017. 11. 6.	소매금융 일반자금대출	E은행
---	-------	-------------------	--------------	--------------	-------------	-----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일에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 ③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④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 제1항).

한편 원고가 정한 위 ②항의 지연손해금율은 2019. 4.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연 8%이다.

4) 이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2017. 11. 13.경 보증금액이 480,000,000원으로 감축되고, 보증기한이 2018. 11. 6.로 연장되었고(이하 '이 사건 제1변경약정'이라 한다), 2018. 10. 24.경 보증금액이 456,000,000원으로 감축되고, 보증기한이 2019. 11. 6.로 연장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2변경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 회사의 부동산 처분행위

1) 피고 회사는 2019. 6. 4.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394,758,13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9. 6. 4. 접수 제7644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1) 피고 회사는 E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2019. 6. 13.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E은행은 2019. 6. 14.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9. 7. 31. E은행에게 443,801,550원(= 대출원금 441,614,656원 + 이자 2,186,89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2019. 7. 31. 피고 회사로부터 32,830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에 충당함으로써 대위변제금 잔액은 443,768,720원(443,801,550원 - 32,830원)이 남게 되었고, 회수한 32,830원에 대한 확정손해금 7원(= 32,830원 × 연 8% × 1/365일)이 발생하였다.

3) 또한 원고는 2017. 7. 31. 위 대위변제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를 위해 3,273,440원(대지급금)을 지출하였고, 피고 회사로부터 같은 날 2,783,120원을 회수하여 대지급금에 충당함으로써 대지급금 잔액은 490,320원(= 3,273,440원 - 2,783,120원)이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 피고 회사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 피고 B, C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회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444,259,047원(= 대위변제금 잔액 443,768,720원 + 확정손해금 7원 + 대지급금 잔액 490,320원, 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443,768,72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 7.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피고 B 2019. 9. 17., 피고 회사 2019. 10. 15.)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 B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제1, 2변경약정에 관하여 E은행에게 발송한 각 신용보증 조건변경 통지서에는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의 동의 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인 2017. 11. 6. 이후에 발생한 피고 회사의 신용보증사고에 대하여까지 피고 B이 이 사건 제1, 2변경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금융위원회는 2012. 5.경부터 기업경영과 무관한 제3자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였고, 원고 등 신용기관도 2018년부터 법인 대표자의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피고 B은 2018. 4. 10.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여 그 때부터 피고 회사와 무관한 제3자로서 연대보증인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 B이 더 이상 대표이사가 아닌 제3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제1, 2변경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금융위원회 및 원고 내부 규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사건 제1, 2변경약정에 기한 연대보증인 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주장 ①에 관한 판단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변경약정에 관한 2017. 11. 3.자 신용보증 조건변경 신청서에 피고 B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한 사실, 이 사건 제2변경약정에 관한 2018. 10. 24.자 신용보증 조건변경 신청서에 피고 B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장 ②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8. 4. 10.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가 2012. 5.경부터, 원고가 2018년경부터 제3자 또는 법인 대표자의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금융위원회의 조치는 행정적 조치 또는 행정지도에 불과하고, 원고와 조치는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하여 곧바로 사법상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인 2018. 10. 24.경 원고와 직접 이 사건 제2변경약정을 체결한 이상 그 연대보증의 효력이 무효라거나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연대보증 책임을 묻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9. 6. 4.에는 아직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이 사건

제1, 2변경약정이 그 이전인 2016. 11. 7.부터 2018. 10. 24.까지 사이에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10일이 채 되지 않은 2019. 6. 13. 피고 회사의 대출원리금 연체를 이유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원고가 2019. 7. 31. E은행에 대위변제를 하는 등으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피고 회사의 무자력

1)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12,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이 법원의 F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9. 6. 4.경 무렵에 ①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아파트, 강원 고성군 G 콘도 H호 중 1/10 지분, 양주시 I아파트 J호가 있었고, 그 가액이 약 706,800,000원(= 이 사건 아파트 520,000,000원 + 위 콘도 700,000원 + 위 I아파트 186,100,000원)인 사실, ②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구상금채무를 제외하더라도 E은행에 대한 채무 3,263,000,000원, K은행에 대한 채무 200,000,000원, L에 대한 채무 6,000,000원, E카드에 대한 채무 8,000,000원, M공제조합에 대한 채무 10,488,000,000원의 합계 13,965,000,000원(= 3,263,000,000원 + 200,000,000원 + 6,000,000원 + 8,000,000원 + 10,488,000,000원)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소극재산의 가액 13,965,000,000원이 적극재산의 가액 706,800,000원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결산보고서(을다 제7호증)를 토대로 피고 회사의 무자력을 평가해야 하고, 위 결산보고서에 의할 경우 피고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다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결산보고서는 피고 회사가 작성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등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피고 회사의 객관적인 재무상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결산보고서의 기준일도 2018. 12. 31.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6개월 이전인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위 결산보고서를 근거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2019. 6. 4.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회사의 일반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공동담보 부족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인 피고 회사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회사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라. 피고 C의 주장 및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대물변제로 제공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피고 C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택한다).

나) 판단

올다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결산보고서에 첨부된 주주임원단기채무 명세서에 피고 C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76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 C의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특정 채권자인 피고 C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은 다른 일반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사해행위가 된다.

2)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고 회사의 재무상태 악화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서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1) 수익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피고 B의 모일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주주이고, 2015. 2. 10.부터 피고 회사의 감사로 재직한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로가 모두 2019. 6. 4. 하루만에 이루어진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394,758,130원은 당시 N은행 부동산 시세의 일반 평균가 약 520,000,000원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에 대한 악의 추정을 반복하여 피고 C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 C의 주장 및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피고 회사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지숙

판사김선범

판사오지영

별지